

【문 1】 다음 중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로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은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율을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기존의 정칙이사들이 퇴임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직전에 퇴임한 기존의 정칙이사들은 퇴임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임시이사들이 새로운 정칙이사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룰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문 2】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③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④ 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3】 다음 중 공무원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다른 후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탁금액의 규모는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여 후보예정자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무원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진지한 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또한 일단 입후보한 자로서 진지하게 당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입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진다.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특별히 청구인의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원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4】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②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법률상 9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11인까지 증원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특정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문 5】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에 한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사 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가리킨다.
-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형사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기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 ⑤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 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

【문 6】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 및 통설에 의함)

- 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⑤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다음의 각 부담금 부과 항목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분양자들에게 부과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
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다.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
라. 카지노사업자에게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
마.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부담방법, 부담비율 기타 부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바.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문화예술진흥법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다음 중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국가경제정책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보호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한 측면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투기의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중과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감귤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농작물로서 감귤산업의 안정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감귤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서 다른 지역의 감귤 생산·유통업자들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문1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의함)

- ①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의 수락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락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용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 교육법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⑤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문14】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 ②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문15】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의함)

- ㄱ.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ㄷ.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 ㄹ.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 ㅁ.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이 천명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 ㅂ.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 제도를 규정함과 아울러 선거권,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민주제 방식의 하나인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 ㅅ.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ㅇ.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ㅈ.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 ㅊ.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 ② ㄱ, ㄴ, ㄷ, ㅁ, ㅂ, ㅅ, ㅇ, ㅈ, ㅊ.
- ③ ㄱ,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문16】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①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행사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수형자가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의 차량운행비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 훈령 제756호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④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원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7】 적법절차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④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⑤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18】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은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순히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 내지 법규범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 ④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처벌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문19】 다음 중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②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③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 ⑤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문20】 참정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의함)

- ①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원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문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 ②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③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이를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 ⑤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물론 양심실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문22】 다음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 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공군 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장병들을 상대로 발행·배포하게 한 것은, 비록 그 내용이 교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④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⑤ 종교단체가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문23】 다음은 헌법 규정을 열거한 것이다. ㉠, ㉡, ㉢,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나열한 것은?

- | |
|---|
|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일 내지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① 15 - 30 - 70 - 40 - 20
- ② 20 - 30 - 60 - 30 - 20
- ③ 15 - 30 - 60 - 40 - 30
- ④ 15 - 25 - 70 - 40 - 30
- ⑤ 15 - 25 - 70 - 30 - 30

【문24】 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받는 길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 ③ 건전한 한약조제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비교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정한 처방에 한하여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④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그 위험방지의 중요성·긴급성을 고려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그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건설업자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과 정원 등에 관한 법률조항들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여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인가주의 및 총입학 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동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문25】 다음 중 상고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는 적용되나,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명령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상고제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 기각을 할 수 없다.
- ④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상고이유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다.

【문26】 신체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다중’의 개념은 ‘단체나 집단’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같은 법 규정의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마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 실행을 위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④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⑤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2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②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 ④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 ⑤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기재행위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문28】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법원이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청구에 의한 서면심사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등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한정할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법관과 법률에 의한 한 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소를 불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상소 불허 입법이 입법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문2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 ③ 국회 본회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30】 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
- ②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홍보에 대하여는 영화와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달리하므로 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④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중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문31】 국회의원의 질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은 대정부질문에서 토론회식 질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하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현안 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되,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32】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 ②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③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 ④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⑤ 국가가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문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 함은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② 존엄한 인간 존재와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 가치를 고려할 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다.
- ③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라는 원시생명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⑤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배아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문34】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 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나.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권한쟁의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정부의 부분기관이나 국회·법원 등 여타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당사자능력 인정된다.
- 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닌 국회부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룰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 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마.

【문35】 다음 중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④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⑤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36】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의함)

-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 권한을 갖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문을 해석하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가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국선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문37】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 통설에 의함)

- ①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행정 관련 각종 비리, 예산운용 실태 전반 등에 관한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②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
- ③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원의 공무원인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38】 다음 중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정당해산심판), 처분(권한쟁의심판)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범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범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범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다.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청구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 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범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40】 보통선거와 선거권 연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여기서 말하는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보통선거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연령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정 참여수단으로서의 선거권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⑤ 선거권연령은 선거권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므로, 입법자보다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에서 선거권행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과, 또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계측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